

의안번호	2214990
의 퇴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6. 1. 29.
추 계 번 호	25A6845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 ②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안 제8조) 및 ③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안 제10조)를 설치·운영하며, ④디지털헬스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 7,400만원(연평균 1억 5,5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150	—	—	—	—	150	30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12	12	12	12	12	60	12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5	5	5	5	5	26	5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제도 운영(안 제14조)	102	105	108	110	113	539	108
합계	269	122	125	127	130	774	155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헬스기술의 개발과 제품화 촉진을 통하여 디지털헬스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헬스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확대와 디지털헬스제품 또는 디지털헬스서비스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헬스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 및 지원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헬스산업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건강정보의 수집, 연계, 저장, 가공, 분석, 제공, 공개 등의 행위에 참여한 주체들이 개인건강정보의 활용에 따른 성과물 또는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1항) 종합계획에는 ①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및 발전방향, ②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③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 (실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디지털 헬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8조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①종합계획의 수립, ②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③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협력 및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를 둠(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제3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디지털헬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제4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제6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를 둠 1.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및 우수기업인증의 취소 2. 디지털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3. 디지털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4조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하여야 함(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인증기준은 ①디지털헬스산업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구비 등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②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계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③디지털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성과가 가지는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인증마크)를 제작하여 우수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안 제15조 (우수기업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재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인증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안 제32조 (수수료)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함(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8조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우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제1항)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우수기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20조 (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헬스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21조제1항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산업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의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 구매촉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는 우수기업의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는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23조 (우수조달물품 ¹⁾ 지정 요청 등)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기업의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의 디지털헬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우수조달 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24조 (시범사업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헬스기술,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3	안 제25조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①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②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등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신제품(NEP), 신기술(NET)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함

* 자료: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디지털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제2항)	
14	안 제26조 (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디지털헬스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디지털헬스기술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재량규정
15	안 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기술 및 전문인력의 교류, 관련 해외정보의 수집·제공, 전시회의 개최, 해외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6	안 제28조 (디지털헬스산업 종합지원 센터)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증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 2. 디지털헬스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3. 디지털헬스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4. 디지털헬스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5. 그 밖에 디지털헬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9조 (홍보·전시·판매·훈련센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전시 및 판매와 의료인 대상 디지털헬스제품 교육을 위하여 홍보·전시·판매·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31조 (조사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지털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수입·사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헬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9	안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
3	안 제7조 (실태조사)	×	현재 산업통상부에서 기 실시 중인 재정사업(디지털헬스케어 실태조사, 150백만원)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참고자료]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4	안 제8조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	—
5	안 제10조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	—
6	안 제14조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	—
	안 제15조 (우수기업인증의 유효기간)		
	안 제32조 (수수료)		
7	안 제18조 (기금의 투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을 재원으로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우수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기금과 투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20조 (조세에 관한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감면 근거 법률의 개정안이 연계발의되지 않았으며 감면 대상, 기준 및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21조제1항 (디지털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0	안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헬스 제품 및 서비스 구매촉진)	×	시·도 및 시·군·구에서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제정안에서 지원 대상 및 기준·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 향과 재정 여건에 따라 소요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정을 통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23조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청 등)	×	조달청이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 기반 등을 확충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정규정으로 인한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편 및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2	안 제24조 (시범사업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시범사업의 추진 요건, 범위,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25조 (전문인력 양성)	×	개정안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헬스기술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기준에 실시하던 재정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되어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14	안 제26조 (표준화의 추진)	×	
15	안 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다만, 각 항목에 대한 재정 지원의 세부 기준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고,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재원 투입 의지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제정 규정과 관련하여 기준에 실시 중인 재정사업의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 * [참고자료]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28조 (디지털헬스산업 종합지원 센터)	×	개정안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우수기업인증, 기업의 시장 진출 상담, 국가 및 공공기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을 지원하게 할 경우 해당 센터에 대한 보조금, 출연금 또는 위탁 사업비 예산 등이 반영되어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이나, 이를 추계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액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현재 디지털헬스산업과 관련하여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없으나, 산업통상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하여 제품의 실증 지원,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한국스마트헬스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지원, 관련 규제 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 [참고자료]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17	안 제29조 (홍보·전시·판매·훈련센터 지원)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헬스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전시·판매·훈련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각 항목에 대한 재정 지원의 세부 기준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고,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원 투입 의지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제정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실시 중인 재정사업의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 * [참고자료]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8	안 제31조 (조사 및 관리)	×	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지털헬스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수입·사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안전사용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성 및 유해성을 검증·분석하기 위한 업무가 필요하므로 해당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에 대한 보조금,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예산 등이 소요될 수 있음 이 경우 소요 비용은 조사 대상이 될 품목의 수, 조사 주기 및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9	안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위탁사업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위임·위탁 대상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필요 인력의 수 등 업무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 ①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②디지털헬스산업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③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④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제도 운영(안 제14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및 인증 제도 운영 주체가 산업통상부장관이므로,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6조)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타 부처가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안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므로, 추계기간 동안 시행 당해 연도인 2027년에만 연구용역비가 1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사업비 예산 내에서 수행하여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안 제8조)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10명, 회의 횟수는 연 3회, 수당 단가는 40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 인원수인 15명으로 함
 - 총 15명 중 제정안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위원장)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위원 정수 15명에서 위 5명을 제외한 10명으로 가정
 - * 공무원인 위원 4명은 산업통상부차관을 포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함
 -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의 수당 지급 대상 위원에서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
 - 회의 횟수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하게 특정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³⁾의 회의 횟수를 준용하여 연 3회로 가정

2)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 차. 위원회 참석비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3) 산업 육성·지원 관련 자문위원회 개요

구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위원정수	총 29명 * 당연 9, 위촉 20	총 15명 * 당연 5, 위촉 10	총 15명 * 당연 7, 위촉 8
회의 개최실적 (2024.7.~2025.6.)	분회의: 서면 2회	분회의: 서면 2회 분과회의: 서면 2회	분회의: 서면 4회 분과회의: 출석 1회, 서면 3회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에 따라 참석수당, 장시간 회의에 따른 가산, 안전검토수당 등을 고려하여 총 40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의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조제5항은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성될 실무위원회의 수, 심의 사항 및 성격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안 제10조)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자문위원회인 의료기관인증위원회⁵⁾의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함
 - 이에 따라 위원 정수는 15명,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한 13명으로 가정하며, 회의는 연 1회 개최되는 것으로 함
 - 그 밖에 수당 단가 등 비용추계를 위한 전제는 안 제8조의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추계와 동일하게 적용

4)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000원내(서면심사 15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5) 인증 관련 자문위원회 개요

명칭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위원정수	총 15명(당연 2, 위촉 13)
기능	· 인증기준 및 인증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등
회의 개최실적 (2024.7.~2025.6.)	본회의: 출석 1회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 (안 제14조)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제도 운영 비용으로는 수혜 기업 대상 설명회 및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비, 인증 심사 비용 및 인건비 등을 추계
 - 안 제28조제1항에서 디지털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우수기업인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증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가정
 - 소요 비용은 인증 제도의 운영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의 2026년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⁶⁾ 운영 예산을 준용하며, 이 중 인건비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그 외의 예산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안 제32조제1항은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할 기업의 수와 수수료 징수 기준 및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종합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보건복지부가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하여 편성한 연구용역비 예산(1억 5,000만원)을 준용하며,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2027년에만 국가재정으로 1억 5,000만원(연평균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6)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표 2]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150	—	—	—	—	15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민간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으로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민간위원 수(10명) × 회의 횟수(3회) × 수당 단가(40만원) = 연 1,200만원

[표 3]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디지털헬스산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12	12	12	12	12	60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민간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으로 총 2,600만원(연평균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민간위원 수(13명) × 회의 횟수(1회) × 수당 단가(40만원) = 연 520만원

[표 4]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디지털헬스산업 인증·지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5	5	5	5	5	26	5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제도 운영(안 제14조)

-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제도 운영 비용은 지식재산처의 2026년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예산을 준용한 뒤 비용의 성질에 따라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으로 총 5억 3,900만원(연평균 1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5] 2026년도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예산액
사전준비	인증기업 발굴 촉진 등을 위한 기업 설명회 및 교육 (행사장소 임차, 안내자료 제작·배포 등)	10
	인증제도 홈페이지 전산 운영	10
인증심사 운영	심사위원회 개최 (노트북 등 전산장비 임차, 심사위원 수당 등)	20
	인증서 제작(인증서, 케이스), 우편발송비 등	10
사후검토	인증제 수혜기업 실태조사(외부리서치)	10
인건비	수탁기관 인건비 (2026년 학술연구용역단가, 연구원 12개월 40% 기준)	40
인증심사 1회 개최 운영 단가		100

주: 기업 설명회 및 심사위원회 등은 연 10회 개최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지식재산처

[표 6]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제도 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디지털헬스 우수기업인증 제도 운영(안 제14조)	102	105	108	110	113	539	108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종합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및 우수기업인증 제도 운영 비용은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 우수기업인증 제도의 경우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납부하는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 지출에서 수입을 차감할 경우 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보다 적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세부-내역-내내역) (회계, 코드)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산업부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일반회계, 3649-302)	-	-
	○ 바이오사업화 지원	-	-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상용화 촉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조기성과 지원, 산업실태조사, 수요공급기업 매칭,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등 기업 중심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환경 조성	1,090
	- 스마트 디지털헬스케어제품 사업화 통합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3,250
	-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지원	AI기반 수면의료제품 실증 등 확산 지원	2,000
	○ 바이오산업기반구축	-	-
	- 지능형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실증 지원 등 제품화	1,130
	- AI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AI 활용개발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2,000
	- 헬스케어제품 멀티모달형 AI 플랫폼 기반구축	멀티모달 의료 데이터 및 XAI 플랫폼 구축	1,000
산업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일반회계, 3651-301)	-	-
	○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 활용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및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개발	55,358
산업부	의료데이터합성기술및의료인공지능 기술기반디지털의료제품개발(R&D) (일반회계, 3651-312)	고품질 합성데이터 생성 및 합성데이터 활용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기술 적용 첨단 디지털의료제품·인허가 자동화 기술개발	3,750
산업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일반회계, 3651-442)	-	-
	○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운영	개인 중심으로 통합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동의·수집·보호·활용체계 마련	15,862

소관	사업명(세부-내역-내내역) (회계, 코드)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산업 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일반회계, 3161-315)	-	-
	○ 교육훈련	-	-
	- 디지털헬스산업전문인력양성	디지털헬스산업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1,000
	- 바이오데이터전문인력양성	바이오데이터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3,000
식 약 처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 3032-305)	-	-
	○ 디지털 신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 등 개발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기준 등 연구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1,058
	○ 디지털 의료제품 인증업무 등 대행기관 지정·운영	우수관리체계 인증 등 대행기관 운영 지원	750
	○ 디지털의료기기 전주기 품질관리 체계 구축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전주기 관리할 수 있도록 실습 등을 통한 교육지원	200
	○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운영	새로운 제도(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등) 및 신산업 분야(디지털융합의약품, 지원기기 등) 도입에 따라 규제를 예측하고 현실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규제전문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1,456
	○ 디지털의료기기 등 인허가 지원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등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신속한 인허가 및 사업화 지원	720

자료: 산업통상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